금융감독원	보 도 자 료	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

보도	2024.2.6.(화) 석간	배포	2024.2.5.(월)		
담당부서	분쟁조정1국 분쟁조정기획팀	책임자	팀 장	김동하	(02-3145-5212)
		담당자	수석조사역	김상희	(02-3145-5216)
			조사역	윤호연	(02-3145-5217)

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

- 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 관련 -

주요 내용

◈ 금융감독원은 최근 접수·처리된 **분쟁내용** 및 **처리결과**를 **금융 권역별**로 분석하여 **금융소비자**가 **유의**하여야 할 **사항**을 **발굴·안내**하고 있음

○ 겨울철에는 화재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, **빈번**하게 **발생**하는 **화재보험 분쟁사례**를 **중심**으로 **소비자 유의사항**을 **안내**

○ 특히, **자영업자**나 **소상공인**은 **화재**에 **취약**하고, 그에 따른 **경제적 위험**도 **큰 편**이므로 **관련 내용**을 **참고**하시어 **화재위험**에 **적절히 대처**할 필요

[소비자 유의사항 주요내용]

❶ **주택을 제외한 일반, 공장 화재보험에서는 가스 폭발 사고 등 폭발·파열 사고**는 **보상되지 않습니다.**

❷ **화재보험 대상 보험목적물**이 **누락되지 않도록 면적**과 **주소** 등을 **정확히 기재**하고, **주소변경 사실**은 **반드시 통지**하여야 합니다.

❸ **손해액 산정**시 **목적물**의 **시가**를 **기준**으로 하며, **경과년수** 등을 **반영**하여 **감가상각**될 수 있습니다.

❹ **목적물**의 **실제 가치보다 낮게 보험가입금액**을 **설정**한 경우 **가입한 비율**만큼의 **손해**를 **보상**(비례보상)합니다.

❺ **임차인**의 **과실**로 **화재**가 **발생**하였더라도 **임차인**이 **해당건물**의 **보험료**를 **부담**하였다면 **보험사**는 **임차인**에게 **구상하지 않습니다.**

※ 본 보도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, 실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는 개별 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1 주택을 제외한 일반·공장 화재보험에서는 가스 폭발 사고 등 폭발·파열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

[분쟁 사례]

□ **식당** 사장님 **김○○**은 **LPG 가스**가 **폭발**하는 사고로 내부 **집기, 비품**이 **훼손**되어 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나, 다행히 **화재로 번지지는 않음**

○ 본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손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, **보험사**는 **화재로 인한 손해**가 **아니라며 보험금 지급**을 **거절**

➡ **화재**는 열 또는 빛을 수반하는 연소현상인 **불로 인한 재앙**을 의미하는데, **LPG 가스 폭발***은 **불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급격한 산화반응**으로서 화재에 해당하지 않아 **보상**이 **불가**

* 약관에서는 폭발, 파열을 '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한다'고 규정

화재보험 보상대상 여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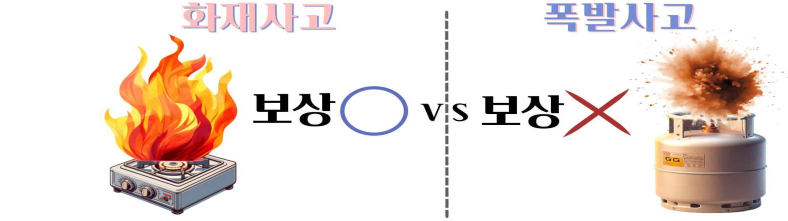

< 소비자 유의사항 >

1 **일반화재, 공장화재 보험**의 **화재담보**에서는 **폭발, 파열** 등으로 인한 **손해**는 **보상되지 않습니다.** (단, 주택화재 보험은 폭발, 파열도 보상)

2 보험사는 **화재담보**와 **폭발·파열 담보**를 **구분**하여 **판매**하고 있으며, **가입자**는 **보장범위**를 **선택**하여 추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.

TIP! **폭발 위험**이 있는 **가스 등을 취급**하는 **음식점 등**은 **「구내 폭발, 파열 손해 특약」 등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.**

2-1 화재보험 대상 보험목적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적과 주소 등이 청약서, 보험증권에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

[분쟁 사례]

□ **정육 도매업** 사장님 백○○은 **매장 밖 창고**에 발생한 화재로 1,000만원 상당의 **원자재**가 **소실**되는 **손해**를 입어 **보험금**을 **청구**하였으나, **보험사**는 **해당 창고**가 **보험 목적물**에 **포함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**을 **거절**

○ 보험증권에는 보험목적물이 '서울시 영등포구 **금소대로 38** ○○한우, **건물 1층, 면적 100㎡**'로 **기재**되었으나, **창고**는 **증권**에 **기재**된 **주소와 다른 주소지**에 **30㎡ 면적의 컨테이너 형태**로 **존재**하는 것으로 확인

➡ **약관**상 '**보험증권**에 **기재**된 **물건**'에 발생한 화재손해를 보상하는데, **지번, 면적** 등에 비추어 **해당창고**는 **보험목적물**에 **포함**되었다고 **보기 곤란**

보장대상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

< 소비자 유의사항 >

1 청약서에 **목적물**의 **지번·면적** 등을 **정확히 기재**하고, 계약체결 후 교부받은 **증권**의 **기재**가 **정확한지 꼭 확인**하시기 바랍니다.

☞ **특히, 주건물**과 **별도**인 **부속건물, 창고 등**의 경우 **분쟁**이 **빈번**하게 발생하고 있어 **보장대상**임을 **가급적 따로 명시**할 필요가 있습니다.

2 **부속건물이나 창고** 등을 **포함**하기로 하고 **설계사**에 **구두**로 **통지**하였다 **하더라도 증권**에 **기재되지 않으면 보상받기**가 **어렵습니다**.

2-2 보험목적물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주소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

[분쟁 사례]

□ **의류 수출업체** 사장님 김○○은 화재가 발생하여 **창고**에 **보관중**이던 의류 **재고자산** 3,000만원 상당의 **손해**를 입어 보험금을 청구

○ 의류재고가 수시로 반출입 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'**창고**(소재지 A) 내 **수용**된 **의류재고**'를 보험목적물로 지정(총괄보험)하였으나, **다른 창고**(소재지 B)로 **이사**하면서 **목적물 소재지**를 보험사에 **통지하지 아니함**

○ **보험사**는 **이사 이후 창고**에 **보관**된 **의류재고**는 보험가입시 보상하기로 약정한 **보험의 목적**에 **해당하지 않는다**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

➡ 이러한 **총괄보험**의 경우 **목적물 소재지**에서 **반출**되면 해당물건은 **보험의 목적**에서 **제외**되므로, **소재지 변경 통지 없이 이사**한 곳에서 발생한 **화재손해**는 **보상대상**으로 **보기 곤란**

소재지 통지를 누락한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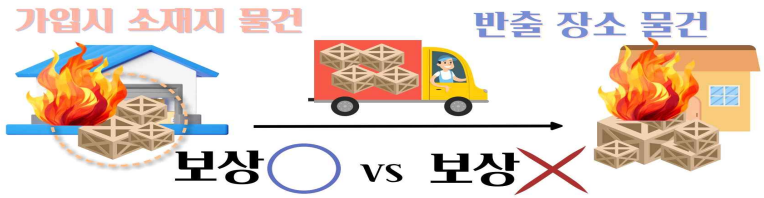

< 소비자 유의사항 >

1 창고 등 일정한 장소내에서 **수시**로 **물건의 반출입**이 **예정**된 경우 **일정**한 **소재지** 내 **물건**을 **보장대상**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2 이러한 형태의 보험계약에서는 **보장대상 물건**이 **지정된 소재지**를 **벗어나면 보상대상에서 제외**됩니다.

TIP! **사업장 이전 등으로 목적물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, 반드시 그리고 지체없이 보험사에 주소 이전 사실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.**

3 손해액 산정시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, 경과년수 등을 반영하여 감가상각될 수 있습니다

[분쟁 사례]

□ **펜션**을 운영하는 사장님 정○○은 **펜션 건물**이 **화재**로 **전소**되어, **신축비용 견적금액 10억원**의 **보상**을 **요구하였으나, 보험사**는 **경과년수 15년**을 **감안**하여 **감가상각분**을 **공제**하고 **8억원**을 **지급**하겠다고 회신

➡ 보험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**사고 당시**의 **시가**이며, **시가 산정시 목적물**의 **내구년한, 경과년수 등**을 고려한 **감가상각**을 **반영**하므로 **신축비용 전액 보상요구**는 **수용**이 **어려움**

손해액 산정기준

< 소비자 유의사항 >

1 화재보험은 **이득금지**의 **원칙**에 따라 **사고 당시**의 **실제손해**인 **시가**를 기준으로 **산정된 손해액**을 **보상**합니다.

2 고정자산의 경우 **신축비용**(재조달가액)에서 **감가상각**을 **공제**하며, 감가상각시 **내구년한, 경과년수 등**을 **반영**합니다.

- **일부 파손**에 따른 **수리비**의 경우에도 **감가상각**이 **적용**됩니다.

TIP! **시가가 아닌 신가로 보상하기로 하는 특약(「건물 복구비용 지원 특약」 등)에 가입하는 경우 신축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**

4 목적물의 실제 가치보다 낮게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한 경우 가입한 비율 만큼의 손해를 보상(비례보상)합니다

[분쟁 사례]

□ **주유소**를 운영하는 사장님 임○○은 **낙뢰**로 **주유기**가 **파손**되어 수리비용 4백만원의 손해를 입었고, **해당 손해액 전부**를 **보험금**으로 **청구**

○ **주유기**의 **시가**(보험가액)는 **4천만원**이었고, 보험가입시 **보험가입금액**을 **1천만원**으로 **설정**하였으나, **계약자**는 **실제 손해**가 **보험가입금액 이내**라면서 **손해액 전부**의 **보상**을 **주장**(벼락도 화재에 포함)

➡ 해당계약은 **목적물 시가**(보험가액)의 **일부**만을 **보험**에 **가입**한 **일부보험**이므로, 보험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**보험가입비율**에 **비례**한 **손해액**임

- 화재보험은 약관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

[약관] 손해액 × $\frac{\text{보험가입금액}}{\text{보험가액}}$, **[사례적용]** 4백만원 × $\frac{\text{1천만원}}{\text{4천만원}}$ = 1백만원

< 소비자 유의사항 >

▣ 보험가입시 **보험가입금액**은 **목적물의 가치(보험가액)**에 맞게 **적절히 설정**할 필요가 있습니다.

- **실제 가치**를 **초과**하여 **가입한 경우**(초과보험) **보험료 부담**은 **커지나, 지급 보험금**이 **늘지**는 **않습니다**. (실제 손해액 한도)

- 반면, **실제 가치**보다 **적은 금액**으로 **가입한 경우**(일부보험) **비례보상원칙**에 따라 **실제 손해액**의 **일부**만 **보험금**이 **지급**됩니다.

TIP! **「실손보상형 특약」 가입시 약정한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는 가입비율과 관계없이 손해액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**

<보험가입금액 설정에 따른 예시>

구분		보험가액 (목적물의 가치)	보험가입금액 (최대 지급가능금액)	손해액	지급 보험금
비례보상형	초과보험	10억	12억	6억	6억
	전부보험		10억		6억
	일부보험		5억		**3억(비)**
실손보상형(특약)			5억		**5억(실)**

(비) 손해액 6억원 X 보험가입금액 5억원 / 보험가액 10억원, (실) Min[보험가입금액, 손해액]

5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더라도, 임차인이 해당 건물의 보험료를 부담하였다면 보험사는 임차인에게 구상하지 않습니다

[분쟁 사례]

□ **상가**를 **임차**하여 **식당**을 **운영중**인 사장님 박○○은 **조리 중 가스불**을 **끄지않아 임차건물 일부**를 **태웠고**, 2천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

○ **임차인**이 직접 **화재보험계약**을 **체결**하지는 **않았으나**, 임차인이 **납부**한 **상가 관리비**에는 **해당 건물**의 **화재보험료**가 **포함**

○ 해당 건물에 **상가 입주자대표회의**를 **계약자**로 한 **화재보험**이 가입되어 있었는데

- **보험사**는 **건물 소유주**에게 **복구비용 손해**를 **보상**한 **후 손해발생**의 **책임**이 있는 **임차인**에게 **해당 비용**을 **구상**(보험자대위)

➡ **임차인**이 **관리비**를 통해 **해당 건물**의 **화재보험료**를 부담한 경우 **보험사**는 해당 **임차인에게 구상청구 불가**

화재보험료 부담 임차인에 대한 구상가능 여부

< 소비자 유의사항 >

1 **건물 소유자**에게 화재사고에 대한 **보험금**을 **지급**한 **보험사**는 **목적물 훼손**에 **책임**이 있는 자에게 **지급 보험금 범위 내**에서 **구상할 수 있습니다.**

2 종래 법원은 **임차인**이 **피보험자**가 **아닌 경우 대위권 행사**의 **대상**으로 판단, **보험사**가 **임차인**에게 **구상**이 **가능**하다고 하였습니다. (대법원 2011다94141 판결 등)

3 그러나, **계약의 실질관계**에 비추어 보험의 이익을 받으려고 보험료를 납부한 **임차인**의 **기대**를 **보호**할 필요가 있어,

- **금감원**은 약관 개정을 통해 **'임차인**이 **보험료**를 **납부**한 경우 **임차인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'**에 대해서는 **보험사**가 **대위권**을 **행사하지 않도록 대위권 포기조항**을 **신설**하였습니다.('21년 시행)

TIP! **임차인은 보험사로부터 구상을 청구받은 경우 화재보험료 부담 사실을 증명하여 적극 항변하시기 바랍니다.**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https://www.fss.or.kr)

참고 **화재보험 관련 용어의 정의**

□ 보험의 목적(보험 목적물) :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

○ 화재보험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, 시설, 집기·비품, 재고자산 등

○ 총괄보험의 경우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하며 보험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

□ 보험가입금액 : 보험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

□ 보험가액 :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(보험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음)

□ 초과보험 : 어떤 물건에 붙인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이 그 물건의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보험

□ 전부보험 :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설정한 보험

□ 일부보험 : 어떤 물건에 붙인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이 그 물건의 보험가액에 달하지 않은 보험

□ 비례보상 원칙 : 일부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사의 부담은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의하여 정하여진다는 원칙

$$\text{지급보험금} = \text{손해액} \times \frac{\text{보험가입금액}}{\text{보험가액}}$$

□ 실손보상형 특약 :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가액보다 낮게 설정한 경우에도 비례보상 방식이 아니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(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)를 보상하기로 하는 특별약관

□ 신가보상 특약 :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입은 실손해를 보상하는 대신 신품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기로 하는 특별약관

□ 보험자대위(구상) :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